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. 12. 17 선고 2023가단5357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송민중

피고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철호

변론 종결2024. 9. 3.

판결 선고2024. 12. 17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전남 구례군 D 임야 23,107m²에 관하여 2022. 1. 17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위 제1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2022. 1. 17. 접수 제3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21. 2. 4. C에게 23,600,000원을 이자 연 7.9%, 지연이자율 최대 연 19%, 변제기 2027. 2. 25.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 C는 2022. 1. 25. 이후 이자, 원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금전소비대차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.

나. C는 2022. 1. 17.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C 소유의 전남 구례군 D 임야 23,107m²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 한다)를 증여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다. C와 피고는 2007. 10. 2. 혼인하였다가 2022. 4. 8.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2022. 5. 10. 협의이혼을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 요지

가. 원고

무자력인 C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써 C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나. 피고

1) 이 사건 임야는 피고가 2014. 6. 2. E로부터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그 명의만 E의 양해를 얻어 당시 배우자였던 C 명의로 하여두고 피고가 점유, 사용하던 토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2) 그렇지 않더라도,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C 사이 협의이혼에 수반한 재산분할로 볼 수밖에 없는데, 이는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안에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3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1) 갑 제4,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, C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어 그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.

가) C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하면 전남 구례군 F 소재 주택 총 4호인데, 그 주택가격의 합계액이 2022년 기준 20,380,000원, 2023년 기준 19,900,000원이다.

나)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위 주택 4호의 가액을 초과하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, 그 외에도 G조합, H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, 전남신용보증재단이 2022. 8. 31. 이를 대위변제하여 그때부터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15,904,708원 및 그 지연손해금, 대지급금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, 2022년 2월경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, 신용카드현금서비스이용금 채무 등을 연체하고 있었다.

2)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써 C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)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,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.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,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·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두8068 판결,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46329 판결, 대법원 2013. 10. 31. 선고

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).

나) 이 사건 임야는 C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C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.

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임야의 대가를 부담하여 이 사건 임야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추정이 반복되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.

다) 을 제1, 2, 4,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임야의 대가는 피고가 축산업을 경영하여 얻은 자금으로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임야의 대가 상당액을 증여한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이를 취득하여 C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(1)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로서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. 피고는 을 제6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, 이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21년의 위성사진, 1조합에서 이 사건 임야에 두릅나무를 식재하겠다는 취지의 2024. 5. 22. 자 서약서로 C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.

(2)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구체적 이유 내지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, 피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서 등 관련 서류가 작성되지도 않았다.

(3) 피고는 C와 혼인 중 C에게 수차례에 걸쳐 5,000,000원에서 50,000,000원에 이르는 금전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, 이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임야의 대가 상당액인 32,500,000원을 증여한 것이라 봄이 더 자연스럽다.

2) 정당한 재산분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와 C 사이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와 C 사이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가)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C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2022. 4. 8. 및 협의이혼이 된 2022. 5. 10.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, 피고와 C가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.

나) 피고는 2022. 1. 17.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을 뿐,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기재하지 않았고, 피고와 C 사이에 재산분할협의서나 그와 유사한 서류가 작성되지도 않았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장두영